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1888     |
| 의 퇴 인 | 김태선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5.10.22. |
| 추계번호  | 25E4131     |

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영유아 양육 근로자의 가사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## 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영유아 양육 근로자 가구의 가사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7년 180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,260억원(연평균 △31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

(단위: 조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누적     | 연평균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
| 영유아 양육 근로자의 가사서비스<br>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<br>(안 제104조의36) | -    | -180 | -360 | -360 | -360 | -1,260 | -315 |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  | 안 제104조의36<br>(가사서비스 이용<br>료에 대한 세액공<br>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사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</li> <li>- 5세 이하 영유아 양육 중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의 30%를 연 2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</li> </ul> |   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2조제3호(비과세소득) | ○    |               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어, 2026.7.1.이후 임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
  - 동 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,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, 이 법 시행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반영된다고 가정
- 영유아 등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수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동 자료를 활용하여 전망
  - 2023년 기준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수는 135.6만 가구임
- 가사서비스 이용가구 비중 및 가사서비스 지출 금액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전망
  - 약 2,157.9만 가구 중 271.1만가구가 가사서비스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 비율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

#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# 가. 추계방법

- (세액공제 신청 대상) 영유아 등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수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
  - 2023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수는 459.1만 가구임
    - 한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를 집계 대상으로 함

- 2023년 기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수는 135.6만 가구임
  -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

[표 2] 미성년 자녀 및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수, 2023년 기준

(단위: 개)

|     |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|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가구수 | 4,590,741     | 1,355,728     |

자료: 통계청, 인구총조사

- (가사서비스 이용가구 비중 및 가사서비스 지출 금액) 전체 가구 중 가사서비스 지출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12.6%이며, 이들의 월평균 가사서비스 지출액은 11.2만원임으로 추정(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)
  - 약 2,157.9만 가구 중 271.1만가구가 가사서비스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 비율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

[표 3] 가사서비스 지출 가구 및 월평균 지출액,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3년 기준

(단위: 만가구, %, 원)

|             | 가구 수    |       | 가사서비스지출액, 월평균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전체가구        | 2,157.9 | 100.0 | 14,085        |
| 가사서비스 미지출가구 | 1,886.7 | 87.4  | -             |
| 가사서비스 지출가구  | 271.1   | 12.6  | 112,096       |

자료: 통계청 MDIS, 가계동향조사(지출, 2023) 마이크로데이터 분석. 안수영, 충남 가사서비스 현황과 제공기관 활성화 현황,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, 2024, p.91 발췌 정리

- (가사서비스 비용 세액공제 신청인원 수 추정) 자녀 있는 가구 중 가사서비스 지출 가구 비율을 곱한 후, 여기에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비중 등을 반영해 가사서비스 비용 세액공제 신청인원수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음
  - (근로소득세 신고자 현황) 우선 2023년 기준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은 2,085.2만명이며,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1,148.1만명이며,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중복신고자는 559.6만명임

[표 4]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인원, 2023년 기준

(단위: 만명, %)

|      | 근로소득세 및<br>종합소득세<br>신고인원,<br>중복 제외<br>(A=D+E) |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합소득세<br>신고인원<br>(E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로소득세<br>신고인원<br>(B) | 근소신고자 중<br>중복자<br>(C) | 순수<br>근로소득세<br>신고 인원<br>(D=B-C) |                      |
| 합계   | 2,673.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085.2              | 559.6                 | 1,525.6                         | 1,148.1              |
| (비중) | (100.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78.0)               | (20.9)                | (57.1)                          | (42.9)               |

자료: 국세청, 2024 국세통계연보, 2024.12

- (가사서비스 비용 세액공제 신청인원수) 유자녀 가구수에 가사서비스 지출 가구 비중을 곱해 가사서비스 비용 세액공제 신청인원수를 도출하고, 2023년 기준 근로소득세 신고자 비율 및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을 곱하여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을 각각 추정

[표 5] 가사서비스 비용 세액공제 신청 인원 수 추정, 2023년 기준

(단위: 개, %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유자녀 가구수                      | (A)            | 1,355,728     |
| 가사서비스 지출 가구 비중               | (B)            | 12.6          |
| 유자녀 가구 중 가사서비스 지출<br>가구 수 추정 | (C)            | 170,822       |
|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추정 <sup>2)</sup>  | (D)            | 133,223       |
| 근소 과세자 비중 <sup>3)</sup>      | (E)            | 67.0          |
| <b>근로소득세 과세인원 추정치</b>        | <b>(F=D×E)</b> | <b>89,219</b> |

주: 1) 가사서비스 지출가구 비중은 2023년 기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전체가구 중 가사서비스 지출가구 비중

2) 근로세 신고인원 추정치는 (C)열에 [표 4]의 (B)열의 비중(78.0%)을 곱해서 추정

3) 근로세 과세자 비중은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비중

자료: 통계청, 인구총조사, 국세청, 2024 국세통계연보, 2024.12을 활용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

- (세수효과 추계방법)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중 가사서비스 비용 세액공제 신청인원 수를 추정하고, 이 중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수를 추정한 후, 가사서비스 지출가구의 연간 가사서비스 지출액 추정치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- (연간 1인당 가사서비스 지출액 추정치) [표 3]의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월 평균 가사서비스 이용비용(112,096원)에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평균 이용금액(1,345,152원)을 추정
  - (연간 1인당 세액공제액 추정) 공제한도 및 공제율 감안하여 1인당 세액공제액 추정
  - (연간 1인당 세수감소액 추정)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의 1인당 결정세액과 1인당 세액공제액을 비교하여 둘 중 적은 금액으로 추정
  - (가사서비스 비용 세액공제 신청 인원수) [표 5]에 따르면,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기준으로 동 세액공제 신청인원 중 근로소득세 신고인원은 13.3만명이며 이 중에서 면세자를 제외한 과세인원 추정치는 8.9만명임

[표 6]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, 2023년 기준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근로소득세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|
| 인원            | A             | 명  | 89,219    |
| 공제대상금액        | B             | 원  | 1,345,152 |
| 공제한도          | C             | 원  | 2,000,000 |
| 공제대상금액(한도 반영) | $D=\min(B,C)$ | 원  | 1,345,152 |
| 공제율           | E             | %  | 30%       |
| 1인당 공제액       | F             | 원  | 403,546   |
| 1인당 결정세액      | G             | 원  | 4,281,106 |
| 1인당 세수효과      | $H=\min(F,G)$ | 원  | 403,546   |
| 총 세수감소효과      | $I=A*H$       | 억원 | 360       |

나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영유아 양육 근로자 가구의 가사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7년 180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,260억원(연평균 △31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 -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어, 2026.7.1.이후 임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
    - 이 법 시행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반영된다고 가정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누적     | 연평균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
| 영유아 양육 근로자의 가사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<br>(안 제104조의36) | -    | -180 | -360 | -360 | -360 | -1,260 | -315 |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세제분석1과  | 강민지 | 박연서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|
| 강민지 | 02-6788-4746 | min1231@assembly.go.kr |